

의안번호	2200095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4. 6. 26.
추 계 번호	24B0426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억 4,000만원(연평균 5억 8,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 중 비용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안 제8조)	500	—	—	—	—	500	100
지역과학기술위 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	408	408	408	408	408	2,040	408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안 제13조)	80	80	80	80	80	400	80
계	988	488	488	488	488	2,940	588

주: 1. 향후 연구용역 계약 단가의 증감, 실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제6조(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제7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제2항)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제8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제9조(지역과학기술 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과학기술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7	제10조(지역별 과학 기술 전담기관)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제11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2항)	
9	제12조(지역연구개발 사업 등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지역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주도사업”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6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제13조(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인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제15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연구기관(이하 “거점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7항)	의무규정
12	제16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연구기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원천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점연구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대학에 협력연구단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제17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연구소(이하 “지역기업연구소”라 한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기술개발·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2. 신규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및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재정 지원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4.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 5. 그 밖에 지역기업연구소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기업연구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기업연구소가 직면한 공통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4	제18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할 시·도 내의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이 지역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제19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활성화하거나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1. 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3.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집적단지에 입주한 대학·연구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내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17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8	제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9	제23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 결)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20	제24조(지역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유통체 계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제10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 기관)	—	
3	제11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 센터)	—	
4	제16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5	제17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	
6	제18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	
7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	
8	제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	
9	제23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10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1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조항
12	제6조(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 시·도의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및 정부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제7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과학기술 관련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확대할지 불확실하며, 지역 과학기술 관련 투자의 범위도 특정하기 곤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관련 투자는 평균 601억원
14	제12조(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평가를 수행하며, 시·도지사가 주도하는 지역주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그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지방분권형 지역 R&D 혁신 역량 강화 방안 연구(1억원) 등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제정안의 조항은 지역연구개발사업 평가 외에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음
15	제15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공공연구기관 지원, 거점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6	제19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의 구축·운영 및 지원, 인 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 는 각종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중임(조사·분석 연 구비 8천만원)
17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 건의 개선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학기술 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 마 련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18	제8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 자 혁신 전략 수립)	○	유사사례 참고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정책연 구 용역
19	제9조(지역과학기술위원회)	○	유사사례 참고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운영 사례
20	제13조(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 력 촉진)	○	유사사례 참고 - 2023년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교류행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 조항별 실시 중인 사업과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정책연구용역비(1.7억원)
안 제10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 지역별 과학기술전담기관 지원(35.4억원)
안 제11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지원(4.7억원)
안 제16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313.7억원)
안 제17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 기업부설 연구소 R&D역량 강화 지원(68.2억원)
안 제18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71.4억원) -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81억원)
안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29.4억원) - 실전문제 해결형 인재양성(16.5억원)
안 제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149.6억원)
안 제23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1.6억원)
안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지역 과학기술정책 및 실태조사 연구(0.8억원) - 지역 R&D 과제 성과 조사(0.8억원) - 지역 혁신 클러스터/혁신기관 조사(0.8억원)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8조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안 제9조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안 제13조의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등의 추진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계기간 중 첫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두어야 하므로, 17개 시·도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당 민간위원을 20명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¹⁾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²⁾
-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을 위해 지역 간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안 제8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원)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정책연구 용역(5억원) 참고

[표 3]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안 제8조)	500	-	-	-	-	500	10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2) 유사 위원회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례 참고(2021년 연 5회, 2022년 연 3회)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억 4,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4억 800만원)
 - 17개 시·도 × 민간위원 20명 × 회의 참석수당 단가 30만원 × 회의 개최 횟수 연 4회 = 4억 800만원

[표 4]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408	408	408	408	408	2,040	408

주: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안 제13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교류 행사 개최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억원으로 추계(연평균 8,000만원)
 - 교류행사 비용 2,000만원 × 연 4회(분기별 1회) = 8,000만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교류행사 비용 편성 사례 참고(2,000만원 × 4회)

[표 5]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 촉진 교류 행사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안 제13조)	80	80	80	80	80	400	80

주: 향후 행사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추계에서 가정한 정책연구용역 단가 및 교류행사 단가의 변동, 실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